

IEC/KOSHA Code기준의 방폭계산에 의한 폭발위험범위 설정에 관한 고찰

차순철*

기술사사무소 차스텍이앤씨(주)

(sc@charstech.com*)

석유화학플랜트, 정유플랜트, 가스플랜트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폭발위험범위(Hazardous Area)의 구분(Classification)이 요구된다. 현재까지 폭발위험범위의 구분은 미국 NFPA Code 497A/497B, 미국 API Code 500, 유럽 IEC Code 60079-10, 국내 KSC 600079-10, 국내 KOSHA Code의 도식화된 전형적인 폭발위험범위를 기준하여 플랜트의 폭발위험범위를 설정하여 왔으나, 환기의 개념을 도입한 IEC Code 60079-10, 국내 KSC 600079-10, 국내 KOSHA Code를 기준하여 Case Study를 통한 방폭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방폭범위의 축소 혹은 비방폭범위로 결정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.